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지원 등 관련 업무 범위 확대〉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36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지원 등 관련 업무 범위 확대	3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13.
- (3) 회 부 일 : 2024. 1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뱅뱅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

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과약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지원 등 관련 업무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연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

양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관련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음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도 지역응
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부터의 응급환자 전원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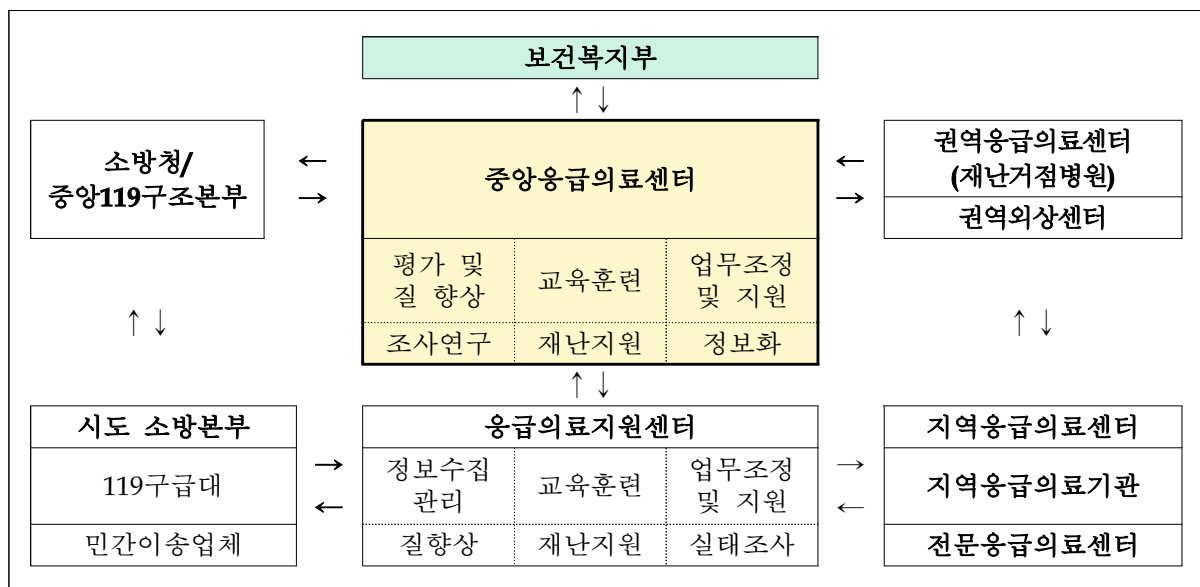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요청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확장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 조정 범위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처치를 마친 후 환자 요구 등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환자 정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취득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제공하거나 전원 후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료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체계 >



□ 따라서,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의 운전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등²⁾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나 최종 치료 결과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정보 취득, 확인 및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으로, 현장 상황 반영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9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